

[일련번호 : 1]

# 경 기 도 체 육 회

## 개 선 · 권 고 조 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당구연맹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당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약 및 기타규정을 절차에 맞게 의결하여 제정·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에 따르면 연맹은 규약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맞게 의결한 후 본회에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정 등 제정·개정)에 따라 연맹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제정·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연맹 「규약」 제52조(규정변경) 및 제53조(규정 등 제정·개정)에도 상기와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경기도당구연맹은 규약 및 기타규정의 관리에 2가지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가. 경기도당구연맹 규약 개정 절차 누락

연맹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에 개정된 규약을 본회를 통해 승인 받지 않았다.

개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년도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종목을 관리·감독하던 종목지역파트에 규약 개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일자로 개정된 규약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승인받지 않은 규약으로 약 \*년간 연맹을 운영하고 있었다.

#### 나. 경기도당구연맹 기타규정의 부존재

연맹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정 등 제정·개정)에 따라 연맹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절차를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맹은 규약과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제외한 기타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규정 없이 운영하고 심의·의결하였다.

#### [조치사항]

경기도당구연맹 회장은 2가지 부적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개선조치하고 본회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도당구연맹 규약 개정 절차 누락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나. 경기도당구연맹 기타규정의 부존재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3(규정 등 제정·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 연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절차를 준수하여 제정하기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 2]

# 경 기 도 체 육 회

## 개 선 · 권 고 조 치

[제 목]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당구연맹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당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각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및 「경기도당구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연맹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및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적용범위) 등에 따르면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연맹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에도 상기와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경기도당구연맹은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2가지 사항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의 부적정

연맹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위원회의 설치),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을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연맹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구성 인원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세부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 나. 각종위원회 미구성

연맹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함께 육성·관리하고 있는 연맹으로써 자문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나 스포츠공정위원회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문체육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당구연맹 회장은 2가지 부적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개선조치하고 본회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의 부적정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위원회의 설치),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맹에서 구성하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인원 등을

재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반드시 제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개선)

나. 각종위원회 미구성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위원회의 설치),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맹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한 이사회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권고)